

제 1176 호
1985.9.1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관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	
제 600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, 학교) 지적승인	2
제 601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	2
제 602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3
제 603 호 : 민영 (연립)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4
제 604 호 : 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	4
◎ 공 고	
제 53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) 실시계획정설공람공고	5
제 536 호 : 소공구역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	6
◎ 사 령	
◎ 정 정	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0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, 학교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41호(78.7.8) 및 동고시 제 691호(84.11.27)로 결정(변경결정)된 다음 도시계획시설(도로, 학교)에 대하여,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

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 다.

1985. 9. 13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 (M)	연장 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1류	20	880	구로구 고척동 157-2	구로구 고척동 174-6	
변경	"	"	"	"	"	"	경인로접속부근 위치 일부변경

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기정	학 교	구로구 오류동 108-28 일대	11,402	
변경	"	"	9,895	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정 정

다.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1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1호(77.9.

26)로 시설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8호(77.11.8)로 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 대하여,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

습과 같이 동사업 시행변경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3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개봉동산 22-1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당초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, 개봉중학교 부지조성공사
- 변경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,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

다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- 당초 : 서울시마포구성산동 231-4 기독교한국오순절하나님의교회 대표 한영철
- 변경 : 서울시구로구개봉동산 22-1 학교법인 한일학원 이사장 토이엘 험푸디

라. 사업시행 규모

- 당초 : 대지면적 12,992㎡
- 변경 : 대지면적 12,992㎡
건축면적 1,564㎡
건축연면적 4,419㎡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당초 : 77.11.14-81.12.31
- 변경 : 77.11.14-86.12.31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, 지적

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이해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. 끝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2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25-2외 1필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9. 13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 (연립)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

2. 사업주체 : (주)대성주택건설, 이두용

3. 사업시행지 및 위치 면적 규모
가. 위치 : 동대문구면목동 25-2 외 1필지

나. 대지면적 : 2,930.90㎡

다. 규모 : 연립주택 3층 2동 42세대

4. 사업기간 : 1985.9. . . -
1986.3. . 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3 호

민영 (연립)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419-7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한다.

1985. 9. 13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 (연립) 주택사업 계획 승인
2. 사업주체 : 서울주택개발, 정해선, 서상연
3. 사업시행지 및 위치 면적 규모
 - 가. 위 치 : 동대문구 장안동 419-7
 - 나. 대지면적 : 2,459.90 ㎡
 - 다. 규 모 : 연립주택 3 층 2 동 30 세대
4. 사업기간 : 1985.9. . . -1986.2. . 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4 호

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89 호로 동대문구 청량리 61 번지 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실시인가 변경 고시된 내용중 준공 예정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 (2 차) 고시한다.

1985. 9. 14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시동대문구청량리동산 1-143 호
- 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청량리 61번지 배수지설치공사
- 다. 사업의규모 : 폭 16m, 길이 16m
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마. 준공예정일 : 86.6.30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재산 : 별첨
- 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

토 지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 지 번	지 목	면적	편입 면적	실 제 이용상황	소 유 자 주 소 성 명	
	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
1	청량리동 산1-143	임야	4,123 [㎡]	256 [㎡]	배수지	강원도춘천시낙원동 8-1	김 면 수
계				256 [㎡]		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35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
 실시계획 결정 공람공고

1985. 9. 13

서울특별시장

공 람 개 요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8 호 (84. 4.26)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7 호 (84.6. 2) 로 지적 고시된 고덕-하일동 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(도로, 하수도) 실시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고 한다.
2.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

1. 사업명 : 고덕-하일동간 도로개설 공사
2. 사업시행위치 : 강동구 하일동 378-1 - 607 간
3. 사업규모 : 도로신설 B = 20 m
L = 970 m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: 인가 일로 부터 2 년
6. 기타사항 :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및 문의바란다

토 지 조 서

기 정		정 장		비 고
지 번	면적(㎡)	지 번	면적(㎡)	
하일동 607-1	1,937	하일동 507-6	1,031	소유자 주소 성명 : 서울시고시 제 612 호 (84. 11.24) 와 동일
“ 608-7	7,406	“ 608-7	109	
“ 306-6	2,476	“ 306-6	14	
“ 307-2	2,155	“ 307-8	539	
“ 307-3	1,240	“ 307-6	797	
“ 317-5	1,114	“ 317-15	10	
“ 316-2	8,932	“ 316-5	392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36 호

소공구역제 2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
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제 368 호 (73.9.6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367 호 (83.7.20) 및 동고시제 220 호 (85.3.30)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소공구역 제 2 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제 221 호 (85.3.30)로 재개발사업 제 3 개발자 지정을 받은 태평양건설(주) 대표이사 민용식의 3인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33 조 및 동법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제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2. 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.

1985.9.14.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개요

- 1)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소공구역 제 2 지구 재개발사업
- 2) 시행구역 : 중구소공동 17-1, 2, 110-2, 4, 111-5, 6, 7, 11, 12, 17, 18, 19, 20, 25 (14 필지)
- 3) 시행면적 : 5,367.4 ㎡

- 4) 시행자 : 태평양건설(주)
대표이사 민용식
삼희투자금융(주)
대표이사 박동희
제일증권(주)
대표이사 이찬인
태평개발(주)
대표이사 박병강

5) 주원사무소의 소재지 : 마포구 도화동 46-1

6) 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4년간

7) 건축개요

- 대지면적 : 4,030.4 ㎡ (건축대지 : 3,115 ㎡)
- 건축면적 : 1,211.41 ㎡
- 연 면 적 : 40,488.16 ㎡
- 건 폐 율 : 38.9% (건축대지 3,115 ㎡적용)
- 용 적 율 : 669.9%
- 층 수 : 지상 19층, 지하 6층
- 용 도 : 업무시설 (부속용도-판매 및 위탁)

8) 관계도서 : 별첨 (생략)

나. 공람기간 : 85.9.17-85.10.16

다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

사 령

◎ 1985년 9월 10일

령제 319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박 명 숙	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	경남 창녕군	지방토목기사

◎ 1985년 9월 12일

령제 331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정 기 완	지방행정 주사에 임함.	내무국 총무과	지방행정 주사보
김 세 숙	지방행정 서기에 임함.	민방위국 비상계획과	지방행정 서기보

서울특별시장

정 정

1. '85.9.10 자' 발간 제 1173 호의 기재사항에 아래와 같은 오기가 있어 정정코자 한다.
- 가. 기재사항 정정

발행일자	호 수	당 초 기 재 사 항	정 정 사 항
'85.9.10	1173 호	P. 10 3. 비상대비업무분야의 임용자격 · 예비역대령이상 - 5급상당	· 예비역대위 이상 - 5급상당